

의장 ·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의안 번호	제 62 호
----------	--------

제안연월일 : 2015. 4. 23

제안자 : 김용범의원의외 4인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의회회의장 및 부의장 불신임을 결의함.

2. 불신임사유

(1) 박정자의장 불신임의 건

(가) 입법기관 기능의 무력화와 집행부 견제기능의 상실

박정자의장은 제185회 제2차 정례회의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자 조례(안) 개정에 반대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구의원을 의장실로 부르거나 전화를 걸어 찬성토록 종용하였는바 이는 입법기관과 집행부 견제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구의회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구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입장만을 대변하고 편을 들어 입법기능을 무력화 시킴은 물론 구의원들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집행부 견제기능을 상실하는등 의장으로서 중대한 직무를 제대로 수행치 않았음.

(나) 의장단에서 의결된 행사를 사전 동의없이 독단적으로 행사를 취소하여 의회운영의 혼란과 의회위상을 추락

2014년 영등포구의회 송년회를 12월19일 제185회 2차정례회 종료후 갖기로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하고 진행키로 되어 있으나 당일 본회의에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이 부결되고 본회의가 종료되자마자 송년회를 사전 의장단과 협의 없이 즉흥적이고 독단적으로 행사 취소를 결정하였으나 다수 의원들의 반발로 송년회가 예정대로진행되자 마지못해 뒤늦게 참석을

하였으나 친척 생일을 핑계로 인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자리를 이탈하였고 매년 집행부 간부들이 행사에 함께 참석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구청장은 물론 집행부 간부가 한사람도 참석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제2차정례회이후 일부 의원들에게 적대 감정을 앞세워 행사장이나 의회에서 만날시 외면하거나 마지못해 악수하는등 지극히 감정적인 행동을 하였는바, 이는 의회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개인 감정에 의존하여 행동함으로써 구의회 운영에 막대한 혼란과 구의회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린 처사로 이는 의장으로서의 자격과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다) 구의회의 독선적 운영으로 의회운영에 불신을 초래

구의회의는 주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주요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의회의 의견과 협력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의장 개인의 권한이 아니라 구의회 기관으로서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장권한으로 오인하며 독선적으로 의회를 운영한바 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영등포구의정비 심의위원 추천(2명 2014. 10)과
- 영등포구장학재단이사 추천 (2명 2015.1)시 의장단을 비롯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한번도 논의하지 않고 의장이 임의로 판단하여 추천하였고
- 2015년도 적십자회비 특별 모금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구의원들이 특별회원이 되어 나눔 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의 행사로 구의회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 전달하는 것임에도 전달식에는 의장단에게 사전 통보 없이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만이 참석하여 소수에 의한 의회운영으로 불신을 초래하였음.

(2) 윤준용 부의장 불신임의 건

본회의 의사진행자로서 부의장의 직분을 정당히 수행 하지 않았음 2015년 3월 6일 영등포구의회 제18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시 영등포구의회 박정자의장 불신임(안)이 접수되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키 위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장이 당사자로서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사회를 부의장이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자동산회 시킬 목적으로 의견 조정을 핑계로 정회를 반복하면서 고의로 회의를 진행시키지 않아 결국 자동 산회시킨 처사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 기회마저 박탈하는 행위는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행위로 이는 부의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우리는 영등포구의회와 의원을 대표하는 박정자 의장과 윤준용 부의장에게 더 이상의 존경과 신뢰를 기대할 수 없고 의장과 부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곤란함은 물론 영등포구의회 위상정립과 원활한 의회운영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의장 및 부의장 불신임의견 상정을 제안함.